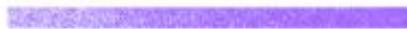


#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피해 증언대회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제목	세부내용
개회사	공동주최 대표자
피해사례 증언	1. 현대중공업지부. 7p 2. 경남지부 두산에너빌리티지회. 9p 3.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12p 4.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14p 5.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16p 6. 대전충북지부. 20p
발제	공인노무사 권동희. 33p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45p
지정토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의견 개선
폐회	

## 인사말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창열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위원장 장창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재처리 장기화는 2차 산재다'라는 절박한 외침 아래,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2023년 전체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214.5일이었고 2024년 227.7일 2025년 6월 현재는 255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산재 신청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 역시 2023년 146일에서 2024년 185.9일, 2025년 6월 현재 205.1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산재 한 건당 평균 400만 원이 넘는 진료비와 임금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산재처리 장기화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생계 위협까지 받으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본은 일하다 근골격계질환이 걸리면 나이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걸리고도 산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절차에 긴 시간까지 소요되니 산재 신청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건수 급증을 처리 지연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이유일 뿐 근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이익 중심의 업무 처리, 불필요하고 중첩된 업무 절차, 그리고 실효성 없는 제도와 대책, 사업주의 고의적 방해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도입된 '추정의 원칙'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현장 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적용률은 4.2%, 2025년 6월 기준 3.2%에 불과합니다. 노동부는 단지 경영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정의 원칙 확대를 미루고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은 도입되었지만 직종 범위가 협소하고 질판위 심의 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1년 투쟁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은 산재처리 기간을 2022년까지 6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노동부의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동부는 산재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복귀를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 장기화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 다른 질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증언대회를 통해 산재처리 장기화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재보험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창열

## 인사말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도시,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장기화 문제를 주제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이 자리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2021년, 금속노조가 제기한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를 6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39,142건의 근골 산재 신청 중 60일 이내 처리된 건수는 고작 12.6%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전체 질병 산재는 평균 175.8일, 근골격계는 113일이었지만, 2025년 현재 각각 255일, 205.1로 늘어났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계의 위협이고, 고통이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과정에서 재해조사와 처리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공단의 실질적인 변화와 약속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반갑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뜻깊게 개최되는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다 병들고,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기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산재처리 지연의 실태와 그 구조적 책임을 짚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의 사실로, 근골격계 질환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치료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산재승인을 받기까지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산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산재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 2024년에는 평균 185.9일, 올해는 205일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재해로 병든 노동자가 7개월 이상 승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공단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구조적 방치에 가깝습니다. 오늘 현장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포기하거나 해고되는 노동자들, 그리고 같은 질병을 세 곳의 병원에서 진단받았음에도, 공단만이 상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특히,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과 동시에 종결되며 휴업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는 상황 등 공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정으로 인해 노동자의 존엄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지만, 실제 적용은 전체 신청건의 5%도 되지 않으며, 그조차도 판정위 심의를 그대로 거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동일한 병명을 세 곳의 병원에서 확인받고도 공단에서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며 불승인되는 사례, 승

인되더라도 치료기간 중 절반의 휴업급여만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여전히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식의 설명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조사 담당 인력도 꾸준히 늘었고, 추정의 원칙도 도입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공단 내부의 관행과 정부의 의지 부재입니다.

노동자의 병을 '노동의 대가'로 취급하는 체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단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자는 수준을 넘어, 선보장 후평가, 질병판정위원회 생략,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등 구조적 개편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입법의제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자가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 아플 때 즉시 치료받을 권리. 병을 산재로 인정받을 권리. 이 세 가지를 함께 지켜내기 위해, 저 역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피해사례 증언 1. 현대중공업지부

- 1) 소속 : HD현대중공업
- (2) 재해자 : 박기수
- (3) 직종/근무력 : 취부사, 22년 9개월
- (4) 요양 신청 상병 :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 (5) 요양급여 신청일 : 2024년 2월 22일
- (6) 산재 결정일 : 2024년 10월 23일
- (7) 문제점
  - ① 산재 처리 기간 지연 : 8개월 소요
  - ② 부산질판위 : 어깨 부위 신체 부담 높은 작업 인정되나 상병 미인지로 불승인
  - ③ 주치의 소견(2024/1/26 하이본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작업관련성 평가(2024/2/20, 진단명 확인), 더프라우병원 소견(2024/10/23)에서 상병 확인
- (8) 현재 진행 사항
  - ① 재심사 청구 : 2025년 4월 29일

저는 HD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24년째 취부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2023년 9월경부터 오른쪽 어깨통증이 심해짐을 느꼈으나 작업강도가 높아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통증으로 여기고 지내다가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현장작업에 어려움을 느껴 2024년 1월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X-RAY 검사와 MRI 검사결과 “오른쪽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과 회전근개 또한 약해져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의 직업과 업무를 확인하시고 업무관련성이 큰거 같으니 산재신청을

권유하셨고 저는 직업관련성 확인을 한번 받고 싶어서 부산 해운대 백병원 직업환경 의학과 교수님에게 진찰을 받고 “직업관련성 매우높음”등급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고 복귀하기 위해서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심사는 8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문자 말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없었고 산재신청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는 휴직을 한 채로 물리 치료와 약물치료를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처음 몇 달간은 버텼지만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에 돈을 빌려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리 기간이 지연되자 주변 도움으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울산지역 부당사례로 김주영 국회의원에게 접수하고 나서야 사업주에 대한 통지와 동영상 심의 사용 여부에 대한 회신이 되지 않았고 이에 제가 항의를 하고 나서 2024년 9월2일 심의사용 재요청을 하였고 이틀 뒤 회신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해야 할 담당자나 감독자 모두 이틀이면 될 일을 3달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공단이 김주영 의원실에 보낸 해명은 담당 직원이 업무가 미숙하고 감독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장기미처리사건에 대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프로세스 문제고 당사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공단이 책임질일은 없다 였습니다.

저는 결국 산재 신청 244일 만에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승인 사유는 신체부담 업무는 인정되나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판정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진단을 받은 병원과 백병원에서는 제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MRI영상을 비교하면서 아픈 부위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단 질병판정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는 거기에 참여한 자문의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재해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한 진단일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묻고 싶습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오로지 두 기관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있지만 책임이 없다면 아픈 노동자는 누굴 믿고 산재신청을 해야합니까?

제가 겪은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공단이 책임지는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시오.

## □ 피해사례 증언 2. 경남지부 두산에너지지회

사례 번호	소속	상병 명	나이	직종명	근무 기간	산재 신청일	산재 결정일	승인 여부
사례1	두산 에너지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M754)	54	발전기조립	34년	23.10.11	24.03.06	불승인
사례2	두산 에너지	좌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M754)	60	발전기 용접	41년	24.08.12	24.12.02	불승인
사례3	두산 에너지	좌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M754)	54	신호수, 크레인	17년	24.10.10	25.02.10	불승인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근골질환 산재처리 지연과 불승인에 대한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어깨의 충돌증후군이라는 동일한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했고 기간 또한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선 불승인에 대한 부당성입니다.

불승인 사유를 확인했을 때 업무와의 연관성은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첫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는 간헐적 업무이거나 개인의 퇴행성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1의 경우 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퇴행성으로 판단하고 불승인 처분을 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34년 이상을 유사 공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의 질환이 있더라도 충분히 업무로 인한 악화의 속도가 가중될 것이 뻔한데, 이를 간과한 공단의 판단으로 인해 당사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

태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례2의 경우에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역시 업무와의 연관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상병부위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승인 한 것인데 이분은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한달간 휴직을 하고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공단이 상병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이 과잉진료를 했거나 함으로써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례3의 경우 간헐적 작업이거나 개인의 퇴행성으로 공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신호수, 크레인 작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분이 근무하는 곳은 터빈공장인데 인양할 한 개의 제품의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합니다. 한 번 인양을 할 때 십여군데 샤클을 체결해야 하고 체결하기 위한 고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구나 벨트가 무게가 수십키로에 달합니다. 간헐적 작업이라고 하지만 횟수가 적을 뿐 한 번 인양하는데 최소 한시간 길게는 두시간 이상 연속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분은 다가오는 하계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수술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의 문제입니다.

세분의 사례는 모두 어깨의 충돌증후군입니다.

공단은 상병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퇴행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경우 개인의 퇴행성으로 판단하고 불승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었고 이 상병은 나이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치부하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놓았는데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재해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사 기간이 4개월, 5개월 길어지면서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수술치료까지 했는데, 결국 불승인을 받게 되면, 재해자는 '기왕 불승인 할거면 빨리 결정을 해줘야 재심을 하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치료를 하든 할 건데 공단 지랄 같네'라는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피해가 동반됩니다.

위 사례에서 한분은 개인질병으로 휴직을 내고 수술치료를 받았고 휴직기간이 한달 이내였습니다. 수술치료 후 일반적으로 2개월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산재요양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인 휴직인 경우 급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또 한분은 동일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계 휴가기간과 연계하여 수술치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분 역시 충분한 치료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개인 질병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기본급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고 있고, 치료비도 재직기간 개인의 총량의 지원금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 같이 동일한 피해사례가 노동조합이 없거나, 중소기업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한다면 재해자가 겪어야 하는 피해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문제와 함께 불승인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 오늘 증언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좋은 방법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피해사례 증언 3.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1) 소속 : 르노코리아

(2) 재해자 : 정종훈

(3) 직종/근무력 : 조립공정, 도장 실러 근무, 19년 7개월

(4) 요양 신청 상병 : 삼각섬유연골 파열, 척골충돌증후군

(5) 요양급여 신청일 : 2024년 10월 21일

(6) 산재 결정일 : 2025년 5월 14일

(7) 문제점

① 산재 처리 기간 지연 : 7개월 소요

② 부산질판위 : 손목 부위 굴곡, 꺾임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③ 주치의 소견

(2024.10.22 하하병원, 좌측손목 척골쪽의 복합 삼각 인대의 부분파열 및 요골 쪽의 측부인대이 파열, 인대 수술요함.)

(2024.10.23 좋은삼선병원,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파열, 척골 단축술 요함.)

(2025. 04.15 좋은삼선병원, 척골 충돌로 인한 월상골 신호 강도 증가되어 있어 척골충돌로 인한 월상골 손상소견이 보이며 삼각섬유연골의 불균일한 신호강도 보이는 바 삼각섬유연골 손상도 동반되어 있는것으로 보임.또한, 2024년 10월 23일 좋은삼선병원에서 시행한 both wrist pronation grip view 상 ulna positive 4.4m. 로 pronat lon 상태에서 반복적 작업에 의해 발생한 척골충돌 증후군으로 추정됩니다.)

(2025.05.26 더탄탄병원, 손목관절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측 관절의 기타 불안정, 척골단축술 요함.)

(2025.05.26 부산큰병원, 관절연골장애, 척골 충돌, 척골단축술 요함.)

(8) 현재 진행 사항

① 재심사 청구 : 2025년 5월 27일

저는 르노코리아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19년째 하고 있는 정종훈입니다. 조립과 도장공장에서 차량에 부품 체결하는 라인 작업자입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손목 통증으로 2024년 10월 21일 업무 종료 후 회사 앞 인근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X-ray 검사를 해보라고 했고 X-ray 검사 후 인대나 관절에 문제 인것 같아 보인다고 하며 정확하게 알려면 MRI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MRI검사를 했습니다. 삼각연골 파열이라며 수술을 해야 되고 손목을 쓰면 안되다며 반깁스를 하고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에 더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다른 큰병원에 갔습니다. 검사결과 척골 충돌증후군이라며 손목을 쓰면 척골과 충돌하여 삼각연골이 파열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반복적인 작업과 작업강도로 인해 뼈에 변형이 왔고, 반깁스를 해주며 손목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삼각섬유연골 파열에 대한 수술을 하더라도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되면 척골 충돌로 또 파열되기 때문에 결국 뼈를 자르는 척골 단축술까지 해야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뼈에 변형이 왔고 그로 인해 척골이 길어 충돌하여 삼각섬유연골이 파열되고 연골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초 병원에서는 삼각섬유연골 파열만 진단받았는데 반복적인 작업으로 척골이 변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산재 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각연골 수술뿐만 아니라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에 질병이 더악화 되기전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다가 5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3일 질병 판정위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 뒤인 4월 14일 작업부담은 확인되나 주치의사

와 상이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승인의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척골 총돌 증후군] 진단명에 대해서 산재요양 신청이 아예 누락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 겨우 판결이 났는데 그마저도 상병이 누락되어 불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 척골총돌 증후군에 대해서조차 요양 불승인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말에 총 4군데의 병원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척골총돌증후군 진료를 잘본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모두 척골단축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속 일을 하지 못하고 산재요양을 신청한 후 수 개월째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꾸려 가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늘어가는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을 볼 때마다 아파도 참고 일을 해야 했는지 후회되고, 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보면 미안하고 괜히 몸관리 못한 저의 잘못이니 죄인같습니다. 지금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4군데를 찾아갔습니다. 4군데 모두 반복적인 노동이나 동작으로 인해 뼈에 변형이 왔고, 이로 인해 척골총돌이 되어 삼각섬유연골은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두군데의 병원도 아니고 4군데의 병원 의사는 모두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척골 단축술을 하지 않으면 계속 아플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병이 상이하다며 불승인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손목을 꺾거나 돌리면 척골이 총돌하는 똑똑하는소리 들립니다. 최초 요양시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누락된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의사들마다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규모가 큰 두군데의 종합병원을 내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담당의사 진료를 받고 손목 부위 통증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척골 총돌로 인한 월상골 손상 소견이 이렇게 잘보이는데 왜 상병이 상이하다는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히려 삼각섬유연골 파열과 척골 총돌 증후군이라며 저에게 MRI를 제출한게 맞냐고 되물으며 MRI 시트 번호까지 기재해 반복적 작업에 의해 발생한 척골총돌 증후군으로 추정

된다며 재심의를 고려해 달라는 소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손목 척골총돌 증후군과 삼각섬유연골에 대한 전문병원 두곳에 찾아가 전문 의사에게 MRI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료를 보았습니다. 두병원 모두 X-ray를 다시 찍어보자 하셨고, 검사결과 척골 총돌증후군이며 삼각섬유연골 파열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각섬유연골은 이미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병원 모두 수술을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척골총돌증후군 치료를 잘한다는 전문이 일치하게 같은 진단을 내린것은 우연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4군대의 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의학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 처리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자들은 웬만히 아프서는 병원을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파도 잘 쉬지도 못합니다. 제가 빠지면 대응해줄 인력이 없어서 쉽게 빠지지도 못합니다. 산재도 잘하지 못합니다. 아파서 쉬게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되기에 생활비 때문이라도 그냥 일을해야 합니다. 저는 뼈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된다는 말에 병원 4군데나 갔습니다. 4군데에서 똑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승인 나고 아직도 재심의 결정이 나지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 피해사례 증언 4.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에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처리 지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2018년 평균 385.9일에서 2023년 952.4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직업병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직업환경연구원 기간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11.8일에서 588.1일로 약 2.8배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게 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역학조사 및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한 근로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위 내용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산재보상보험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내놓은 의안입니다.

현재 한국타이어의 산재 처리기간은 금산공장 평균270일 대전공장 190일 정도로 지연이 되고 있으며 산재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산재가 승인이 나더라도 이처리

지연 기간이 치료요양기간으로 잡혀 승인과 동시에 종결되는 일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재해자들이 죄를 지었다면 열심히 일한 죄입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였는데.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골병이 들었고 산재를 신청하였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불승인.  
설령 승인을 받더라도 종결

내몸이 아파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산재보험을 이용 하는데 왜 우리 재해자들이 산재  
처리지연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2014년 설립되고 2015년부터 산재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타이어지회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 지  
연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  
런 산재처리 지연이 예견된 상황인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 팀장 부장 그위로 지사장 본부장과 수없이 면담을 진행하였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지만 말로만 떠들어 되는 근로복지공단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  
다.

올초 산재처리 지연을 개선하기위해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 1부가 조직개편을 하였지  
만 산재처리지연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그이유인즉 퇴직한 사람들이 산재신청을 많  
이하고 있다입니다. 돌려말하면 퇴직한 사람들이 산재신청을 많이 해서 산재처리가 지  
연되는 거니 그만좀 신청하라는거 아닙니까?

산재처리지연은 우리재해자들을 벼랑끝으로 몰아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제발 산재처리지연으로 고통받고있는 재해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말  
고 산재처리지연 기간 단축 및 문제해결,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선보장 후평가 도입  
을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 지연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한처리로 재해자들을 죽이지 마라 투쟁!!

## □ 피해사례 증언 5.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엠시트 공장에서 26년 넘게 자동차 시트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공장은 자동차의 앞좌석, 뒷좌석을 모두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전체 공정의 90% 이상이 수작업입니다. 특히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부품을 반복해서 다루는 고된 작업이 일상입니다. 저는 이 중 뒷좌석을 조립하는 '리어라인'포함 26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계속 아프던 왼쪽 어깨 통증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천안센텀병원에 내원했고, '좌측 어깨 극하건 파열'과 '총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반복적인 어깨 사용에 의한 것"이라며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를 제대로 받고 회복해 다시 일하기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안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도 없었고, 산재는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 판정자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정말 납득하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한 '뒷좌석 조립라인' 작업내용이 아닌, '앞좌석 조립라인'의 작업내용이 제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은 사용하는 부품도, 작업자세도,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단 직원은 저희 회사에 앞좌석 산재 신청이 많다는

이유로 임의로 앞좌석 작업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판결문에는 "극하건 파열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명백히 공단의 행정착오와 잘못된 자료 제출이 만든 피해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 면담도 진행했지만, 돌아온 답은 "실수는 인정하지만 판결에 영향은 없다"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습니다. 어떤 사과도 없었고, 심지어 판정문에 사용된 잘못된 자료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시에도 정정되지도 않았습니니다.

이로 인해 저는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휴업급여도 받지 못했으며 결국 아픈 몸을 안고 다시 작업현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 밤잠을 설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행정착오 하나로 한 노동자의 인생과 건강이 좌우되는 것이 지금의 산재처리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재지연과 피해를 입는 동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노동자가 병에 걸린 뒤, 스스로 증명하고 싸워야만 인정되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저는 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실수로 제출된 자료는 정정되도록 제도화하며! 산재 심사과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기를 요구합니다!!

일하다 아프면 치료받고, 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한 산재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피해사례 증언 6. 대전충북지부

### 1. 증가되는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기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
전체 질병재해 신청(건)	18266	18634	24871	28796	31666	24544
근골격계 신청(건)	9426	9,925	12,449	12,491	14,448	12,124
근골격계 승인(건)	6984	6,997	8,802	8,695	9,928	8,095
근골격계 승인율(%)	74.1	70.5	70.7	69.6	68.7	66.8
근골격계 산재 처리기간(일)	136.5	121.4	113.0	108.2	146.0	183.2
근골격계 추정의원칙 적용(건)	66	367	450	468	610	502
근골격계 추정의원칙 적용(%)	1.0	3.7	3.6	3.7	4.2	4.1
근골격계 추정의원칙 현장조사(건)	45	271	325	345	457	382
근골격계 추정의원칙 처리기간(일)	110.6	109.1	75.2	85.0	119.1	140.9
근골격계 추정의원칙 승인(건)	63	340	438	464	600	494
근골격계 추정의원칙 승인율(%)	95.5	92.6	97.3	99.1	98.4	98.4

-자료 : 이용우 의원실, 근로복지공단 자료 재정리

금속노조에서 2021년 산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골격질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의를 함. 그후 2022년 평균처리기간이 108일로 단축이 되었으나 23년은 146일, 24년은 183일로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 한국타이어 사례에서 보는 근골격계질환 처리 장기화 원인과 사례

#### 1) 고의로 지연할 수 있는 사업주 의견서(사업주 조력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7.13.) 구법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재해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고의로 2달 이상을

지연하면서 처리기간이 증가를 하였고, 수차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면담을 통해서 사업주 의견제출과 관련해서 3차례 공문시행 후에도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업주 의견 없음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2021년 금속노조 산재지연투쟁 당시 사업주의견서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와 요구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견서 제출기한을 정하고, 사업주가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음.

고용노동부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단기 개선으로 고시,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하여 “산재 신청 통보시 보험가입자 의견 조회 생략(시행규칙 개정)”을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고용노부가 금속노조와 합의한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가 고의로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제출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2021.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악해서 개정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21.12.31. 일부개정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삭제>

이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업무 처리절차에서 사업주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됨으로 인하여 한국타이어 사측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사업주의견서제출을 지연하면서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넘게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법적·절차상 사업주 의견이 의무이기에 사업주의견을 생략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이로 인해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산재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동부지사는 다른 지사에 비해서 미처리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음.

심지어 2021년 산재처리 단축 투쟁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그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해서 밝혔으며 그 중 공단 산재처리 업무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1) 근골

격계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실행방안 마련(21년 1월.), 2) 신속한 재해조사 위한 근골격계질병 다빈도 사업장 협조(21년 4월) - 근골격계질병 다빈도 사업장(20개소) 신속한 자료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으나, 한국타이어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1년에 2~300건의 근골격질환 산재신청이 접수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의 자료 제출 관련 협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과 제도를 악용하면서 재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23년부터는 한국타이어에서 근골격질환 산재신청 후 승연여부 결정까지는 짧게는 177일부터 최장 294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 2)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적용강화는 무용지물

2017년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산재처리기간 단축투쟁 과정에서 추정의 원칙을 확대(지침을 고시고로 상향)하고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이에 6대 상병에 대해서 타이어공정(한국타이어 산재신청 증가와 승인사례가 축적)이 추정의 원칙 직종에 포함이 되었음

그러나 한국타이어 사례에 보다시피 추정의 원칙 적용되상이 되는 재해자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기간은 최소 110일에서 최대 289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추정의 원칙 적용되는 상병과 직종에 대해서도 다른 근골격질환 처리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이 되고 있음.

또한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되는 6대 상병과 함께 추가로 근접부위 질병에 대해서 진단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체 상병을 복합상병으로 간주하고 산재처리를 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음. 노동조합에서는 여러 진단명으로 진단이 된 사건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 대상 상병에 대해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주상병 이외 복합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이나 최초요양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을 수차례 요청을 함.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고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해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하고 공단은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이에도 공단 스스로가 이를 포기하고 있음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단기 개선으로 소속기관 요양결정권 강화, 즉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되는 신청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아예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음.

### 3) 질병판정위원회 사업주 의견 진술 무한 보장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이 개악이 되면서 산재처리 절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적이 되었고, 제도 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견서 제출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데 4~5개월을 소요하고 있으며, 또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에 금속노조 조합원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참석을 하여 의견진술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해자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재처리과정에서는 재해자 신청내용과 사업주 의견이 다를 경우 재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자료 열람을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동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종 결정 단계인 판정위 심의회에 와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 재해자는 어떤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음. 이는 산재와 관련한 입증책임을 온전하게 지고 있는 재해자에게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심의회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와 관련해서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 심각한 문제 발생.

또한 심의회의에서 사건을 접한 판정위원들은 재해자의 주장 및 입증내용과 사업주 의견 및 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보류 판정을 하고, 재조사 보완결정을 내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산재처리기간이 더욱 더 증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재처리절차상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임에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음.

### 3. 산재처리 지연의 문제점

#### 1) 일반적 문제

산재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단체협약으로 유급병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을 제외한 미조직,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기제가 되고 이는 산재은폐 확산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야기함.

단체협약으로 유급병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병가 기간 및 급여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 이전에 복귀하면서 질병상태가 악화되거나 온전히 치료 및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됨.

근골격질환의 경우 초기에 확인하고 적극적 치료(병원진료, 부담 작업에서 벗어나기)를 하면 쉽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됨.

#### 2) 한국타이어에 발생하는 문제

한국타이어는 사규 및 기업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휴직 6개월 이상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조항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로 뇌심혈관질환 및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재해자에게 회사는 퇴직처분을 강행하였고 다행히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퇴직처분을 무효화 시켰음. 다만 이과정에서도 회사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산재처리가 6개월이상 지연되는 문제와 함께 면직조항으로 인해서 근골격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재해자들은 산재신청 후에 승인되기 전까지 업무를 하고 승인 후에 치료와 휴업을 하거나, 심각한 재해자들의 경우에는 수술 후 한달정도 요양 후 복귀하여 업무를 하다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다시 요양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임.

전자의 경우에는 산재신청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수술 및 장기요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산재기간이 단축 승인되고, 상태는 호전이 되지 않았음에도 요양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재해자는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참고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4. 금속노조 산재처리 단축방안 요구

##### 1)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과 무관하게 산재처리 업무프로세스 가동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고통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보험가입자의 견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각지사별로 사업주 의견서 제출과 별개로 산재진행 업무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을 내부 지침으로 공문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본부 대전동부지사의 경우 사업주 의견서 제출(사업주가 재해자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업무이력을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재해조사가 지연이 되고 있음)

##### 2)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조력의무 강제.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의 산재를 위해서 조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하고 있음. 오히려 한국타이어의 경우 재해자의 업무이력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짓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산재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 3) 추정의 원칙 확대

2022년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확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기간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복합상병에 대해서 추정의 원칙을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임.

복합상병이라고 하더라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음.

복합상병은 해당 업무부담이 상호작용을 해서 발병이 되는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상병과 공정이라고 하면 해당 상병을 인정하고, 추가상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밟는 것이 산재처리 절차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이미 추정의원칙 대상 상병에 대해서는 승인율이 99%가 되고 있으며, 불승인 사유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이 될 뿐 업무부담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없음)

이를 통해서 공단 재해조사 담당자의 중복업무를 줄이고, 재해자의 산재지연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4) 산재처리 절차 간소화

현재 업무상질병 산재업무 처리절차는 복잡하고 심의가 중복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공정에서 해당 상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는 절차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5) 선보장 후평가 제도 마련

산재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되면서 산재보상보험법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음. 이에 산재 신청을 한 산재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보장 후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함.

[21년 산재처리 단축 관련 고용노동부 합의 내용]

##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 □ 기본 원칙

- (신속 보상) 산재처리 절차 중 필요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항목·과정은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신속성 제고\*
  - \*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 재검토
- (공정 보상) 산재 신청 근로자가 공단의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승인 여부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공정성 확보\*
  - \*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해원인 조사 및 공정한 결정

### □ 개선 방향

- (처리기간 단축 목표)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00일 이내가 되도록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개선
  - \* (現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172.4일>) 근골 121.4일, 뇌심 132.4일, 직업성 암 334.5일 등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현행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추정의 원칙 안착 및 적용 확대
- (판정위원회 심의제외) 재해조사(자문의 판정), 특별진찰, 역학조사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강화하여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
  - 판정위원회 운영 개선(소위원회 활성화 등), 역량강화(조직 및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처리기간 준수
- (승인전 치료) 산재 승인 전이라도 재해자가 치료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승인 전 치료 확대, 진료비 대부제도 활성화 등)

### □ 향후 계획

- (세부방안 마련) 단기,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 추진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노사, 전문가 참여)
- (의견 수렴) 개선방안에 대하여 노사, 전문가 포럼, 간담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 참 고

###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

#### □ [즉시 개선] 일선기관 지침시달, 공단 규정개정 등(6개월 이내)

- ①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적용사례 전파, 조사서식 개선 등 지침시달)
- ② 재해조사 및 판정 신속처리를 위한 매뉴얼 개선·시행
- ③ 판정위 심의제외 확대(COPD 등) 및 인원 보강('21년 하반기 00명 증원)  
\* COPD 연간 판정위 심의(건): '18년 338 → '19년 318 → '20년 272
- ④ 특별진찰 결과 있는 경우 소속기관 추가 의학자문 생략
- ⑤ 특별진찰 업무 조정(근골격계질병 중심 운영, 다른 질병 축소 등)
- ⑥ 산재 승인 전 치료 인정범위 확대\*

\* 특진기간 중 근골격계질병 치료 인정범위를 업무관련성 '매우높음' → '높음'까지 확대

#### □ [단기 개선] 고시, 시행규칙 개정 등(1년 이내)

- ① 추정의 원칙 확대(현 지침을 고시로 상향, 연구용역 결과 추가반영)
- ② 소속기관 요양결정권 강화(추정의 원칙 심의제외)
- ③ 산재 신청 통보시 보험가입자 의견 조회 생략(시행규칙 개정)
- ④ 특별진찰, 역학조사 건 중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시행규칙 개정)
- ⑤ 판정위원회 조직 및 인력 확대(4개 판정위 신설, 인력 충원)

#### □ [중장기 개선] 예산반영, 시행령, 법률 개정 등

- 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개선(시행령 개정 등)
- ② 판정위원회 제도개선 추진(소위원회, 상임위원 법령화 등)
- ③ 산재 승인전 치료 활성화(예시: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 진료비 대부 활성화, 생계지원방안 연구, 상병수당과 연계방안 등)

## 첨부 1

# 그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노력

### □ 제도개선

- 추정의 원칙 도입\*('17) 및 적용강화('21)
  - \* 업무상질병 계량적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장조사, 역학조사 생략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및 구체화('18)
  - \* 뇌심혈관계질병 과로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 업무가중요인 구체화
- 판정위원회 심의제외 질병 확대('21.2.)
  - \* 전문(역학)조사결과 높음, 특별진찰 결과 매우높음 사건 심의제외
- 판정위원회 소위원회 의결권 부여 및 정신질병 분산심의('21.3.)
  - \* 상병명 확인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한 소위원회 의결권 부여
- 판정위원회 신속(일괄)심의기준 마련·적용('21.5.)
  - \* 특별진찰 결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사건

### □ 운영 효율화

- 근골격계질병 처리기간 단축 위한 세부실행방안 마련('21.1.)
  - \* 추정의 원칙 적용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 마련·시달
- 신속한 재해조사 위한 근골격계질병 다빈도 사업장 협조('21.4.)
  - \* 근골격계질병 다빈도 사업장(20개소) 신속한 자료협조 요청
- 부산판정위 신속심의 TF / 질병처리지원 TF 구성·운영('21.4.)
  - \* 부산판정위(6명), 울산·통영지사 질병처리지원(17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속처리 평가지표 신설('21.4.)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요기간 관련 영향요인 분석('21.4.)
- 근골격계질병 적정 프로세스 및 투입인력 분석·연구('21.6.)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산재처리 현황]

번호	성명	상병명	근무공정	추청의원칙 대상	산재신청일	심의접수일	심의일	승/불 결정일	비고	처리기간
1	이민식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 M751 )	재료	대상	2022.08.09		2022.11.29	2022.12.01	승인	115일
2	관전구	추간판탈출증 요추3-4-5간 (M512)	PCR2성형	대상	2022.08.11	2022.10.31	2022.11.22	2022.11.28	승인	110일
3	김윤태	제4-5좌측 요추간판의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M512),제3-4좌측 추간공의 경추간판 탈출증,4-5우측 추간공 경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판의 탈출증(M508)	검사		2022.08.08		2022.11.29	2022.12.06	승인(죽저근막염만 불승인)	121일
4	최봉환	외측상과염	정련	대상	2022.08.27		2022.12.20	2022.12.22		118일
5	서정래	(주상병)우측 견관절부 극상건병증 (M751) (부상병) 우측 견관절부 오구견봉인대 주위 낭종성 병변(M2551)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M754)	정련공부 PM		2022.10.06		2023.02.18	2023.03.03	승인	149일
6	조현호	(주상병)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M754) (부상병)우측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M2411)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M750)	정련		2022.12.26	23.4.28	23.06.14	2023.07.01	승인	188일
7	서권부	(주상병)좌측 외측상과염 (부상병)좌측 내측상과염	TBR성형	대상	2022.12.30		22.04.30	2023.05.18	승인	122일
8	임병기	(주상병)제4-5 요추부 및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압출		2022.12.17		2023.06.30	2023.07.13	취업 치료중	196일
9	유성현	(주상병) 제2,3,4,5번간 추간판탈출증 (부상병) 제 2,3,4,5.요추-천추간 척추증	TBR성형	대상(복합상병)	2022.11.29		2023.03.23	2023.04.04	취업 치료중(불승인)	127일
10	김익상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M751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4 좌측 어깨관절와순의 찢김 M756	TBR성형	대상(복합상병)	1월15일		23.07.06	23.07.07	승인	173일
11	정희복	우측 슬대퇴근관절염	TBR성형		1월16일		23.07.06	.23.07.07	승인	173일
12	박윤호	우측 죽저근막염(M722)	QA		2023.05.01		23.10.26	2023.11.01	승인	185일
13	오시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견봉하 관절낭염(M751)	재료2		23.05.23		23.10.23	23.11.28	일부승인	196일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M1901)								
14	이재서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M2413), 우측 손목의 결정증(M6743),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M2583)	TBR가류	대상(복합상병)	2023.07.05	2023.11.21	24.2.16	24.2.21	승인	232일
15	정인철	요추 제4-5번간 추간관 장애(M518), 요추 제4-5번간 척추증(M4726)	LTR가류		2023.07.07	2023.11.22	23.12.26	23.12.30	일부승인	177일
16	송석규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및 힘줄 부분 파열(M771)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M2413) 우측 수부 관절병증(M1394)	재료		1월16일		7월25일	7월 26일	승인	193일
17	황상필	추간관탈출	가류		6월12일	10월8일	11월27일	12월2일	승인	174일
18	김종철	우측 손목관절 윤희낭염(M7193), 손목관절 힘줄염(M7793), 손목관절 결절종(골내)(M6743)	검사		8월6일	25.2.4	25.03.26	25년3월31일	승인	299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일부 산재처리 현황]

번호	성명	상병명	근무공정	추청의원칙 대상	산재신청일	심의접수일	심의일	승/불 결정일	비고	처리기간
1	최성인	우측어깨(M751)	PCR성형	대상	2024.3.4		24.12.17		불승인	289일 이상
2	정석범	우측손목관절(M6743)	정련		2024.3.12		24.12.26		불승인	290일 이상
3	김현성	우측 내/외상과염(M770,M771) 좌측 손목관절(M2413)	압출	대상 (복합상병)	2024.4.3		25.1.21		승인	294일 이상
4	최용운	우측어깨(M756, M750)	압출		2024.4.11		25.1.16			281일 이상
5	전창성	좌/우 팔꿈치 상과염(M770,M771)	PCR 성형	대상 (복합상병)	2024.5.27		25.2.25			270일 이상
6	허재영	우측 상과염(M771) 우측어깨(M751,M756)	압연	대상	2024.6.11				승인	
7	양현일	우측 무릎(M6596) 허리(M519)	성형		2024.6.14		25.2.25		불승인	257일 이상
8	박성용	우측어깨 회전근개	성형	대상	2024.6.17		25.2.25		승인	254일 이상

				(부합상병)					
9	민경준	우측어깨 회전근개(M751, M756)	정련		2024.6.25		25.2.18		승인 239일 이상
비고	<p>지난 해 10월, 11월 산재신청한 조합원들 최근 판정위 심의일정들이 잡히고 있음.</p> <p>2025년에 산재 신청한 조합원들은 아직 산재처리 진행중 - 수 차례 면담을 통해서 한국타이어 담당자 선정, 질병보상팀 체계 마련을 해서 사업주 의견서 받고 취합하는데 4개월로 단축하고 있는 상황. 즉 산재신청 후 현장조사 시작하는 시점이 4개이 도과한 시점부터 업무처리가 진행되면서 산재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음</p>								

## □ 전문가 의견

### 근골격계 질환, 산재 문제와 개선 방안

권동희 (공인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cpla1004@workhuman.co.kr

#### ■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는 복합적·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

○ 산재 처리 기간의 장기화 문제는 단순히 처리 기한으로 불이익 현상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산재 사안의 구조적 문제를 표출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접근해야 함.

구분	전체	근골	뇌심혈관	정신질환	직업성암	소음성난청	호흡기계	기타질환	
'20년	신청	18,634	9,925	2,380	561	487	3,035	1,778	468
	승인	11,432	6,997	928	376	329	2,014	545	243
	불승인	7,202	2,928	1,452	185	158	1,021	1,233	225
	소요기간	172.4	121.4	132.4	209.5	334.5	287.4	261.8	156.0
'21년	신청	24,871	12,449	2,276	696	576	5,630	2,648	596
	승인	15,699	8,802	872	491	401	3,793	987	353
	불승인	9,172	3,647	1,404	205	175	1,837	1,661	243
	소요기간	175.8	113.0	120.6	202.0	301.9	303.7	222.9	126.6
'22년	신청	28,796	12,491	1,922	657	720	7,550	4,941	515
	승인	18,043	8,695	671	424	477	5,197	2,281	298
	불승인	10,753	3,796	1,251	233	243	2,353	2,660	217
	소요기간	182.0	108.2	113.8	188.2	281.0	328.4	163.7	109.1
'23년	신청	31,666	14,448	2,035	684	1,056	9,152	3,820	471
	승인	18,333	9,928	675	450	634	5,521	879	246
	불승인	13,333	4,520	1,360	234	422	3,631	2,941	225
	소요기간	214.5	146.0	122.2	205.6	289.5	333.7	226.5	144.3
'24년	신청	38,219	19,445	2,178	810	1,000	10,861	3,398	527
	승인	21,827	13,058	709	471	548	6,183	597	261
	불승인	16,392	6,387	1,469	339	452	4,678	2,801	266
	소요기간	227.7	185.9	133.5	223.8	288.1	317.2	236.9	145.7
'25년 6월	신청	22,319	11,952	1,050	347	634	6,118	1,931	287
	승인	12,527	7,835	296	195	296	3,556	264	85
	불승인	9,792	4,117	754	152	338	2,562	1,667	202
	소요기간	255.0	205.1	139.7	217.0	282.4	377.5	243.1	211.9

- 2024년도 전체 질병의 처리 기간은 227.7일, 근골격계 질환은 185일, 정신 질환은 223일, 직업성 암은

288일, 난청은 317일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5년 6월 현재 전체 질병의 처리 기간은 255일이며, 근골질환은 205일임.

- 신청 및 처리 기한의 장기화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산재 포기에 대한 고민과 실제 산재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불승인 등에 대한 우려로 ‘휴직이나 병가 사용’으로 적극적 요양 치료가 아니라 ‘업무 지속 및 업무와 치료 병행 중 요양 신청’으로 초기 적극적 치료와 수술적 처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산재 은폐율은 66.6%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임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우, 산업노동연구, 2021년 제27권 제1호). 이는 공상 처리와 산재 포기(은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국 산재 처리 기한의 장기화는 산재 포기(은폐)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재해 위험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공상 처리는 건강보험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이는 건강보험의 왜곡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공상 처리 및 산재 은폐는 일면적으로는 산재보험 신청주의의 한계로 발생함. 신청주의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급여 신청권의 포기, 개별실적 요율제의 한계(왜곡), 취약 노동자 보호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음. (“산재보험 신청주의의 한계”, 김영미, 2022, 사회법 연구 제 46호)
- 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무급 등 금전적인 피해로 인한 가정생활의 파탄, 동료 및 사업주와 갈등 증가, 부당 해고,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등이 초래되고 있음.

○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될 수 없어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도 “조기 종결, 조기 복귀, 미흡한 재활, 산재 비급여 요양”을 할 수밖에 없음.

- 일단 노동자들이 적극적 진단과 치료를 꺼리기 때문에, 필요 검사 등을 통해 상병 확진 이전 병(의)원 등의 치료 기간에 대해서 ‘진단 시점’ 이전이므로, 요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진단 시점 이전 기간에 대해 요양비 및 휴업급여 미지급으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음.
-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상 ‘요양 기간’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추가 제출되는 진료계획서상 요양이 불승인되거나 단축되어 적극적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재 신청의 포기 이후 추후 3년 이후 재청구한 사안의 경우에 있어 요양급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

해 불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요양 청구시 지급된 요양급여가 부재한 사유로 공단은 ‘재요양’ 을 불승인하고 있음.

○ 산재 질병 사건 수의 증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판정 절차의 미흡 상황은 판정위원회의 사건 처리 수 증가, 2회차 연속회의로 인한 부실한 판단, 특히 산재 인정률 지속적 하락, 지역 판정위원회별 인정률 편차, 근골질병의 인정률 편차를 초래하고 있음.

- 판정위원회는 국회의 ‘처리 사건의 과다 및 처리 기한의 장기화 지적’ 으로 인해 현재 하루에 동일 위원으로 사건만을 분산하여 1회차 회의, 2회차 회의를 연속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회차 회의의 집중성이 부족하여 부실한 판정이 초래되고 있음. (형식적으로 10.3건을 심의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2배의 사건을 동일 위원으로 처리하고 있음)

- 2024년도 전체 질병 22,931건 중 13,332건이 인정되어 58.1% 인정률이며, 2025년 6월 현재 22,319건 중 12,527건이 인정되어 57%를 보이고 있음. 2019년 64.6%, 2020년 63%, 2021년도 63.3%, 2022년 62.9%, 2023년도 59.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년도별 판정위원회 심의현황 (근로복지공단) 참조)

- 2024년도 전체 근골질병 인정률(64.7%)이며, 서울남부판정위의 경우 70.6%임에 반해 경남판정위는 58.1%에 불과함.

### ■ 산재 신청 건수의 증가는 노동자 권리 확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산재 처리 기간의 증가는 단순히 산재 신청의 사건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 산재 신청의 증가는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

- 우리나라의 2022년 말 당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는 20,173,615명(2022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년보, p.29)이며, 2022년도 프랑스 적용 현황 근로자 수는 20,672,2687명과 비슷함(2022년도 프랑스 산재보험 통계 (근로복지연구원, 2024.11)). 그러나 아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상 사고는 6.6배, 업무상 질병은 3.7배, 출퇴근 사고는 14배’ 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프랑스						
□ 연도별 산재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23. 연도별 재해종류별 승인 현황 (단위: 건, %)					
		구분	처리	승인	불승인	승인율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20년	147,512	합계	123,921	112,670	11,251	90.9	청구건수	승인건수	승인율	청구건수	승인건수	승인율
		질병	18,634	11,432	7,202	61.4	1,267,534	892,023	69.7%	197,616	137,780	68.5%
		사고	97,555	94,081	3,474	96.4	(92.7%)	(80.0%)		130,512	65,086	50.1%
		출퇴근	7,732	7,157	575	92.6				113,187	68,963	61.4%
'21년	168,927	합계	141,727	128,466	13,261	90.6	1,270,968	880,885	68.6%	199,450	137,846	70.4%
		질병	24,871	15,699	9,172	63.1	(93.9%)	(85.3%)		97,325	54,045	55.8%
		사고	107,924	104,411	3,513	96.7				118,082	64,011	53.8%
		출퇴근	8,932	8,356	576	93.6						
'22년	181,792	합계	150,862	135,983	14,879	90.1	1,000,769	715,071	68.9%	145,878	107,938	69.1%
		질병	28,796	18,043	10,753	62.7	(94.7%)	(97.0%)		97,116	66,738	68.8%
		사고	112,740	109,125	3,615	96.8				111,123	66,738	60.1%
		출퇴근	9,326	8,815	511	94.5						

- 특히, 업무상 질병에 있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24년도 한국은 11,146건(승인 (2024년도 심의현황분석, 근로복지공단(2025.1.))이며, 프랑스의 경우 41,066건임(위 보고서 p.47)
-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노무제공자 적용) 등으로 신청 사건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편적인 분석이며, 장기적으로 업무상 질병 사건 수의 급증에 대한 보상 시스템 개선 및 구조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유급병가, 상병수당 등의 산재보험의 제도적 보충 기제가 있는 나라와 동일 선상에서의 장기화 문제를 평가할 수는 없음.**

- 한국의 타 국가와 달리 유급병가제도나 건강 보험상 상병수당 제도가 없으므로 산재 신청에 있어 큰 불이익과 난관이 존재함.
- 공무원의 경우 일반병가제도(매년 60일의 유급병가, 이후 병 휴직제도)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병가제도는 없음.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 유급 병 휴직 제도가 없음.
- 이에 따라 노동자가 산재 신청할 때 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사용자의 해고 촉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이 다 있음, OECD 국가 중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정도임, 그러나 미국은 주(州)별로, 직업별로 상이하고, 스위스는 민간 상병수당 보험으로 contract out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관련 해외 사례 연구” ,박찬임, 2024, p.98)

〈표 3-8〉 OECD 국가의 산재보험과 상병수당의 제도 형태

구분	산재보험	상병수당
사회보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조세방식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사업주책임	호주, 뉴질랜드, 미국	
혼합	체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칠레, 영국
없음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한국,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 산재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지 부족으로 유명 무실화된 지 오래임.

○ 산재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임. 이러한 신속한 보상이 노동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은 결과적으로 시행규칙의 잘못된 제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산재 처리 기간인 ‘7일’ 의 기한이 형해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된 것은 ‘판정위원회 심의기간, 재해조사기간(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118조(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진찰요구기간(특별진찰, 법 제119조), 의료기관 요양신청 대행 서류 확인기간(시행규칙 제20조),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기간(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역학조사기간’ 이 제외되기 때문임. 결국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무한정 재해 조사 기간’ 을 설정하고 있음.

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 재해조사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재해조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김태선 의원실의 산재법 개정안(의안번호 7530)은 질병 조사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함)

**■ 단기적으로 추정의 원칙 실효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법령 등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근골질환의 경우 추정의 원칙 적용 사건은 2023년 전체 청구 사건인 14,448 사건 중 추정의 원칙 승인 600건 기준으로 볼 때, 4.15%에 불과함. 2024년의 청구 사건 19,445건 중 798건으로 4.11%에 불과함. 2023년의 경우 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 처리 기간 119.1일(근골 전체 질병 사건 평균 122.2일), 2024년의 경우 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 처리기간이 140.5일(근골 전체 질병 사건 평균 133.5일)임. 2023년도에 비해 처리 기간이 21.4일 증가함. 사실상 추정 원칙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

**□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6월
처리건수	66	367	450	468	610	813	378
승인건수	63	340	438	464	600	798	372
승인율	95.5	92.6	97.3	99.1	98.4	98.2	98.4
현장조사	45	271	325	345	457	612	308
처리기간	110.6	109.1	75.2	85.0	119.1	140.5	134.2

- 참고로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승인 건수는 18만 4천490건임.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누리집에서 2022년 ‘strain or Tear’ 로 분류 사건). 장기적으로 근골 질환 사건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근골질환 추정의 원칙 확대 및 실효성 확보는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있으며, 동반 상병까지 확대해서 시행되어야 함.

- 근로복지공단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근골격계질환 처리절차 및 업무량분석’ 보고서(2022.3.7.)는 추정의 원칙 강화,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확대 등이 제시된 바 있음.

업무처리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Fast Track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을 고시로 상향해 법제화함</li> <li>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현행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6개 상병 외에 추가가 가능한 동일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상병(부상병)까지 추정의 원칙 대상으로 확대</li> </ul>
심의회 대상 확대	판정위 심의 제외 질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범위확대(추정의 원칙 등) 개정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판정 단계 개선을 통해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제도 개선</li> </ul>
의학자문 생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질병 의학자문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조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의 의학자문(상병확인을 위한 임상),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직업환경의학의 자문) 생략</li> </ul>
법정처리 기한 준수	업무처리단계별 기간 명시 및 기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의 재해조사 업무처리기간 논의를 통해 명시 필요</li> <li>'업무관련성 특별진찰 30일 이내' 처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과 근로복지공단 규정(지침) 개정으로 명시. (단, 시행 시기는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충원, 제도 개선 사항이 완료된 이후)</li> <li>역학조사 기간도 현행 규정하고 있는 180일 준수 방안 마련</li> </ul>

- 2021년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당연 인정 질병 목록 확대 및 개선 방안 연구” (2021.11.21.,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20년 신청 자료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2018년 보고서 및 2019년 보고서를 비교하여 직종 승인율을 바탕으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직종을 검증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일부 직종의 경우 일관성이 부족하여 추정의 원칙에서 제외하였다.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은 현장 조사 점수 등도 높았으며, 인간공학 및 직업환경의학적 판단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라고 하였으며, 「추정의 원칙은 동반 신청 상병이 있더라도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직종과 진단이 있으면 일단 적용을 하고 비대상 질환은 개별 판단을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고 타당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다」 고 명시하고 있음.(보고서 P.36)
- 2022년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적정성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2023. 3월)에서도 「추정의 원칙 대상 질병을 동반 신청 가능 상병까지 확대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별표 2 개정(안)

추정의 원칙 대상질환	동반신청 가능상병	비고
경추간판탈출증	없음	협착증이 기준미달임
회전근개 파열	총돌증후군, 상부관절와손 파열, 이두박근건 (염)파열, 점액낭염, 관절염	
상과염	총신전근건, 총골곡근건 파열, 관절염	척골신경증후군이 기준미달임
수근관증후군		
삼각섬유복합체 손상	수지 및 손목 관절염, 척골총돌증후군	
드퀘르병		
요추간판탈출증	없음	협착증, 전방전위증이 기준미달임
반월상 연골 파열	없음	관절염이 기준미달임

○ 공무원재해보상법은 법 제4조의 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조문으로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단순히 추정의 원칙이 의학적 판단 범주에서 벗어나 상당인과관계를 명시한 조항(법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위임 입법의 한계 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임.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과제 및 대안

○ 산재 신청 기회 확대 및 상병 미인지를 사유로 한 불승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 ①요양급여 신청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 를 원칙적 필요 서류로 개정, ②상병 미인지지 노동자 불이익 최소화, ③노동조합의 산재 신청 위임자격 부여, ④산재 권리 포스트 배포 작성 홍보 등 조치가 필요함.

- ①진단서를 원칙적 필요 서류로 개정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제1항에 있어 ‘별지 제3호 서식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노동자들이 ‘요양급여 신청소견서’ 를 알기 어렵고, 일부 의사의 미발급 행위도 여전하며, 일부 담당자는 진단서 제출 시 다시 ‘요양급여 신청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도 존재함. 산재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며, 고용노동부령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음. 현행 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상 제출을 강요하는 ‘요양급여 신청소견서’ 는 법령에 근거한 서류가 아님. 일반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재해보상에 있어 공무상 요양 신청 때 ‘진단서’ 와 ‘의무기록지’ 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②상병 미인지시 노동자 불이익 최소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의결) 제1항 제5호 “최초 심의 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 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공단은 ‘상병 미인지(진단 상병 미확인), 추간관 탈출이 아님(추간관 팽윤에 불과함), 경미한 퇴행성 질환,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수준 등’ 의 사유로 불승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자의 의사에 대한 불신, 노동자와 의료기관의 분쟁, 치료 및 요양 중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적절한 검사를 통한 상병 진단 및 수술에 있어 노동자의 고의적 행위나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함에도 신청 상병과 수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함. 산재보험 요양기관에서 진단된 상병에 대한 신청시 상병 오류나 미확인의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해야 함. 아울러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고로 간주하여 노동자에게 산재보상을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함.( “산재를 말하다” , 권동희, 숨쉬는책공장, 2023, p.145~147)

○ 근골 추정의 원칙 실효성 및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①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의 확대, ②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 때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생략, ③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시 지사에서 승인 처리(판정위원회 미회부), ④판정위원회 판정시 근골 추정의 원칙에 해당할 경우 승인 처리, ⑤(직업성 암 사건에 있어 역학조사기관평가와 마찬가지로) 근골질환 특별 진찰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시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승인, ⑥업무상 질병 사건의 처리 기한 법정 명시(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최대 60일), 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규칙 등 개정이 필요함.

- ①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의 확대 : 현재 4%대에 불과, 현장조사 비율도 74.9%(2023년)으로 매우 높고 처리 기한도 일반 사건과 동일하여 실효성이 없음.
- ②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 때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생략 : 현재 공단 지침(발생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2-25호)상 공단 담당자가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 적용 여부

3. 평가 결과 및 의견	
평가결과	1. 상병명 - <input type="checkbox"/> 확인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확인됨
	2. 유효기간 - <input type="checkbox"/> 인정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인정됨 (기간 : _____개월)
	3. 근무기간 - <input type="checkbox"/> 인정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인정됨 (기간 : _____년 _____개월)
종합 의견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원칙 적용 대상에 (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기타 의견 :	
20____년 ____월 ____일	
검토자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번호 _____ 호 (서명)	
<small>※ 근무기간: 신체 부담업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small> <small>※ 유효기간: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날부터 최초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small>	

검토서' 를 작성한 이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적용 여부는 '2. 직업력 조사, 직종, 직력 확인(근무시작, 근무종료, 근무기간)' 을 평가함에 불과하여, 굳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실적 판단 사항임. 또한 판정위원회에 직업환경의사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사에서 자문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함

- ③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시 지사에서 승인 처리(판정위원회 미회부) : 앞의 ②의 제시 사항으로 개정하기 어렵다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사의 평가상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면 판정위원회 미회부 및 지사 결정으로 규칙 제(개)정이 타당함. 시행규칙 제7조 제6호 “그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으로 보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 제6호를 신설함 (예시 : 6. 영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2호 마목에 (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병)
- ④판정위원회 판정시 근골 추정의 원칙에 해당할 경우 승인 처리 : 명확히 근골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만,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불승인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음. 판정위원회 심의안에 반드시 '추정의 원칙 해당 여부' 를 표기하여 반드시 승인 판정하도록 함.

채용일자 : 1996.06.24.  
 담당업무 : 의장부(차량 내부, 외부 부품 조립)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은 신청인이 상당기간 차량 내·외부 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근무형태, 수행업무, 작업 자세,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X타이어 장착업무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 수행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장시간 거상동작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공정별 주기작업(회전근무를 시행하는 점 등 직업

적 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미흡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⑤근골질환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시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승인 : 시행규칙 제73(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4호 개정이 필요함. (4. 영 제1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 매우 삭제)

○ **근골 처리 기한 단축 및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① 지사별 근골질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조사 담당자의 역량 강화, ③ 특진 기관별 처리 매뉴얼 일치, ④ 건설 노동자 근무력 산정시 고용보험내역 이외 추정 업무력 인정, ⑤ 표준 동영상 활용시 반드시 영상 확인하는 노동자 동의 절차 구비, ⑥ 판정위원회 근골질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필요함.

- ① 지사별 근골질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통상 지사 관할 사업장별로 근골질환이 청구되고 있고, 이에 대해 동일 직무나 부서에 대해 매번 새로운 조사를 하는 시스템임. 산재로 인정된 사건별 동영상 및 판정서를 관리하여, 재해자나 조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함.
- ② 조사 담당자의 역량 강화 : 조사 담당자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재해조사서 작성, 동영상 촬영 및 평가 등이 차이가 크게 발생함.
- ③ 특진 기관별 업무처리 매뉴얼 일치 : 동일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직종별 적용 동영상 등의 차이가 존재함.
- ④ 건설 노동자 근무력 산정시 고용보험내역 일용내역 이외 추정 업무력 인정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서상 200일을 1년으로 평가하여 근무력 축소함. 2004년 이전 업무력의 과소평가로 인해 건설 노동자의 근골질환에 있어 불이익 존재함. 공단의 이러한 잘못된 지침 및 관행적 판단에 대해 위법 판단 취소 재결례 및 판결 수용할 필요가 있음.
- ⑤ 표준 동영상 활용시 반드시 노동자 동의 절차 : 현재 확인서상에는 체크만 하게 되어 있음. 구체적 영상을 노동자에게 보여준 뒤 동의하는 절차 필요함.
- ⑥ 판정위원회 근골질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동일 부서, 동일 직종, 동일 상병, 동일(장기) 근무력 사건에서, 판정위원이 매번 달라서 판정 사건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 마치며

- 산재보험법의 목적(신속성, 공정성)에 맞는 시스템과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일면적 단편적 방안이 아닌 구조적인 개혁과 법률, 규칙 개정이 필요함.
- 노동자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고, 공정하고 열린 토론과 개혁이 필요함.

### 참고자료

-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우, 산업노동연구, 2021년 제27권 제1호
- “산재보험 신청주의의 한계”, 김영미, 2022, 사회법 연구 제46호
- 2022년도 프랑스 산재보험 통계 (근로복지연구원, 2024.11)
-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관련 해외 사례 연구”, 박찬임, 2024,
- “근골격계질병 처리절차 및 업무량분석”보고서 (근로복지공단,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2022.3.7.)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당연 인정 질병 목록 확대 및 개선 방안 연구”(2021.11.21.,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정성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2023. 3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산재를 말하다”, 권동희, 숨쉬는책공장, 2023
- 년도별 판정위원회 심의현황 (근로복지공단)

## □ 금속노조 대응 계획

#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해소를 위한 금속노조의 투쟁계획

### ○ 산재처리 지연 문제 현황

- 2021년 노동부는 산재처리 기간을 연내 100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22년까지 6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금속노조와 약속한 바 있음. (합의사항은 별첨한 자료 참조)
- 그러나 금속노조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2년부터 24.6월까지 공단에 신청된 근골 산재신청 39,142건 중 노동부가 약속한 60일 이내 처리(승인, 불승인, 일부승인건)건수는 4,913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12.6%에 불과.
- 김태선 의원실이 제공한 연도별·질병별 산재 신청 현황 및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질병의 경우 2024년 처리 기간은 227.7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처리 기간이 185.9일로 나타나 노동부의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함.

### □ 연도별·질병별 산재 신청 현황 및 소요기간(김태선 의원실 제공)

구분		전체	근골	뇌심혈관	정신질병	직업성암	소음성난청	호흡기계	기타질병
'21년	신청	24,871	12,449	2,276	696	576	5,630	2,648	596
	승인	15,699	8,802	872	491	401	3,793	987	353
	불승인	9,172	3,647	1,404	205	175	1,837	1,661	243
	소요기간	175.8	113.0	120.6	202.0	301.9	303.7	222.9	126.6
'22년	신청	28,796	12,491	1,922	657	720	7,550	4,941	515

구분		전체	근골	뇌심혈관	정신질병	직업성암	소음성난청	호흡기계	기타질병
	승인	18,043	8,695	671	424	477	5,197	2,281	298
	불승인	10,753	3,796	1,251	233	243	2,353	2,660	217
	소요기간	182.0	108.2	113.8	188.2	281.0	328.4	163.7	109.1
'23년	신청	31,666	14,448	2,035	684	1,056	9,152	3,820	471
	승인	18,333	9,928	675	450	634	5,521	879	246
	불승인	13,333	4,520	1,360	234	422	3,631	2,941	225
	소요기간	214.5	146.0	122.2	205.6	289.5	333.7	226.5	144.3
'24년	신청	38,219	19,445	2,178	810	1,000	10,861	3,398	527
	승인	21,827	13,058	709	471	548	6,183	597	261
	불승인	16,392	6,387	1,469	339	452	4,678	2,801	266
	소요기간	227.7	185.9	133.5	223.8	288.1	317.2	236.9	145.7
'25년 6월	신청	22,319	11,952	1,050	347	634	6,118	1,931	287
	승인	12,527	7,835	296	195	296	3,556	264	85
	불승인	9,792	4,117	754	152	338	2,562	1,667	202
	소요기간	255.0	205.1	139.7	217.0	282.4	377.5	243.1	211.9

- 최근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025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전체 질병의 경우 255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5.1일까지 늘어남. 금속노조가 농성 투쟁을 한 2021년 전체 질병 산재 처리 기간 175.8일, 근골격계 산재 처리 기간 113일 에 비해 각각 79.2일, 93.2일 증가한 상황.

-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진 것은 윤석열 내란 정권이 “산재 카르텔”을 잡겠다고 요란을 떨며 산재 노동자를 공격하기 급급했고, 정권에 부화뇌동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의 정당한 산재보험 신청과 승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임.

-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지만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산재처리 건은 2024년 기준 813건으로 전체 근골격계 산재 중 4.18%에 불과함. 그마저도 “추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대다수 사례가 추정의 원칙 미적용 근골격계 산재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며 처리기간이 140.5일에 달하는 상황.

□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현황(김태선 의원실 제공)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6월
처리건수	66	367	450	468	610	813	378
승인건수	63	340	438	464	600	798	372
승인율	95.5	92.6	97.3	99.1	98.4	98.2	98.4
현장조사	45	271	325	345	457	612	308
처리기간	110.6	109.1	75.2	85.0	119.1	140.5	134.2

-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재건수의 증가로 인해 산재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기간의 장기화와 불승인에 대한 걱정으로 산재 신청 자체를 꺼리는 상황에 직면함.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산재 승인을 염두에 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가 은폐되는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음.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담당인력도 2020년 554명에서 2023년 691명으로 증가함)

-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 지연으로 인해 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상당함. 유급병가 제도 및 상병수당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및 질병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노동자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2022년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 1건당 총 진료비는 4,300,218원, 비급여 항목은 1,479,235원에 달함.

- 산재처리 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회 등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된 바 있을 정도로 공감대가 큼. 2024년 10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음.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를 특별진찰과 관련하여 지적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마저 처리기간 문

제를 거론하며 선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

- 2023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는 당시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라 정한 바 있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것을 논의함. 만약 처리 기간이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급여를 선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기도 하였음.

- 22대 국회에서도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처리 기간 명시와 선보장 등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

-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법 제·개정이나 복잡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산재처리에 대해 “무한정 재해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발생한 부분이 많아 공단의 의지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음.

- 금속노조는 2021년 합의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추정의 원칙 관련 제도개선 약속과 사업주의 악의적인 의견 제출 지연, 산재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선보장을 중점적으로 제기한 바 있고 노동부에 이러한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함.

- 그간 산재보험에 노동자의 질병과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 신청되었던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의 포괄성 확대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금속노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가진 역할과 위상에 맞게 보다 포괄적이며 보다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노동부도 국정기획위원회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있는 “산재 보험급여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공약이행을 위해서 재해조사기간 법정화와 선보장을 위해 25년 하반기 개정안 마련 및 26년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인력부족 핑계에서 벗어나 산재처리 지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을 내줄 것을 요구함.

## ○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쟁계획

- 금속노조는 2021년 7월 노동부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있음.

- 산재처리 기간 현행 172일에서 2021년 100일 이내 단축 개선 추진
- 근골격계 질환은 2022년까지 현행 131일에서 60일 이내 신속 처리 개선 추진
-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련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 판정위 인력 충원 및 인프라 확대 등 추진
- 즉시 규정 개정 및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 선보장 후평가 제도 등 근본 대책 논의
- 개선방안 이행 관련 후속 점검 및 논의 진행

- 이 중 일부 내용의 경우 실현된 것도 있지만 특히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소에 직접적인 부분인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문제와 추정의 원칙 적용확대, 선보장 문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재해조사기간 명시화나 추정의 원칙 적용확대, 악의적인 사업주 의견 제출 지연 문제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손보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음.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내린세력을 몰아내고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

- 금속노조는 2021년 노동부와의 합의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60일 이내 신속처리, 질병으로 인한 산재처리는 10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재차 요구하는 바임.

- 금속노조는 이번 증언대회 이후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기 위해 노동부 장관 임명 이후 기자회견 및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계획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시 금속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노동부 앞 농성 등 투쟁의 결의를 높일 것임.

## ○ 2021년 금속노조 투쟁에 따른 노동부와의 교섭결과

### (1)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 등

개선방안	세부 내용
①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 제출 생략	- 산재 신청 시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10일 이내 의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삭제 - 연내 법제심사 공포까지 완료. 관련 공단내부 규정 개정 준비
②추정의 원칙 법제화 및 확대, 판정위 심의 제외	- 근골격계 6대상병 추정의 원칙 고시형태로 법제화 (현재 공단 내부 업무지시) -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동일부위 복합상병 (부상병)도 추가 가능 상병이 있을 때 추정의 원칙 대상으로 확대. 고시 법제화 추진에 반영 (10월 고시내용 마련, 11월 의견수렴, 12월내에 고시 법제화 추진) - 재해조사 과정에서 추정의 원칙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사에서 승인 결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항을 신설해 심의 제외로 추진
③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확대	- 역학조사, 특별진찰, 재해조사 건 중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심의제외,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은 심의 - 근골질환 판정위 심의건 중 50%를 심의제외 목표로 추진 - 현행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낮음' 4단계를,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3단계 '있음, 심의필요, 적음' 안을 최대한 반영하겠음. - 이중 '있음'에 해당건은 판정위 심의 제외로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 - 근골질환 연구진, 노동부 의학자문회의 등의 의견 10월 중 수렴. 12월내에 특진 업무관련성 평가 단계안 확정하고 내년 시행규칙 개정 진행. (내년 6월 내 진행)
④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처리 제외기간 관련	- 판정위 심의 기간 20일로 추진. 현행 시행규칙 제8조 개정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연장' 내용 삭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후) - 역학조사는 180일 내 진행이 규정으로 되어 있음. 노동부에서 역학조사 기관에 처리기간 준수 공문 발송 및 지도 강화 - 특별진찰 기간은 30일 내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공단에 공문

	<p>발송. 공단 내부 규정 또는 지침 개정으로 이행 확보 (지난해 특별진찰 처리 기간 평균 46.3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해조사 기간은 합의 되지 않음. 노동부와 공단은 30일 내 처리 주장하고, 민주노총은 14일 내 처리 요구</li> <li>- 현재 공단에서 근골질환 처리 프로세스 연구용역 진행 중. 연구결과 나온 뒤 (9~10월) 재 논의. 9~10월 중 진행.</li> </ul> <p>(현재 제기된 3가지 안 : 14일 내 처리, 30일 내 처리, 20일 내 처리,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p>
--	---

(2) 공단 규정개정, 지침개정, 소속기관 업무지시 등

개선방안	세부 내용
①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깨 회전근개파열과 총돌증후군 함께 신청되는 경우 추정의 원칙 적용, 사례전파, 재해조사서, 문답 서식 표준화 등</li> <li>- 7월 내 시행</li> </ul>
②재해조사 및 판정 신속처리를 위한 매뉴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골격계질병 신체부담업무 현장 조사 주요 작업 자세 및 작업별 세부 촬영방법 매뉴얼 개선</li> <li>- 6월 시행 완료</li> </ul>
③판정위 운영 효율화, 심의제외 확대(COPD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권 가지는 소위원회 운영 효율화(전산 개선 등)</li> <li>- copd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심의제외,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은 심의</li> <li>- 8월 내 시행</li> </ul>
④특별진찰 결과 있는 경우 소속기관 추가 의학자문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진결과에 상병확인 및 업무관련성평가 의학자문 내용 확인. 추가적인 소속기관 의학자문 생략</li> <li>- 6월 시행 완료 (지침 개정)</li> </ul>
⑤특별진찰 의뢰 관련 자료목록 신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진찰 의뢰 시 병원 제공 기초자료 목록 질병별 신설. 해당 목록표 함께 의뢰</li> <li>- 6월 시행 완료</li> </ul>
⑥특별진찰 업무 조정 (근골격계질환중심 운영, 다른 질병 축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골격계질병 중심 특별진찰 운영 뇌심질환 제외</li> <li>- 7월 내 시행 (업무지시)</li> </ul>
⑦산재 승인 전 치료 인정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 승인 전까지 근골격계질병 치료 인정 범위 현행 '매우높음'에서 '높음'으로 확대</li> <li>- 7월 내 시행 (업무지시)</li> </ul>
⑧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질병 의학자문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조사 과정에서 상병확인을 위한 임상,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직환의 의학자문 생략</li> <li>- 규정 및 지침 개정 9월 내 시행</li> </ul>
⑨추정의 원칙 복합상병 처리 개선	<p>가. 동일부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결과 추정의 원칙으로 확대 가능한 복합 상병의 부상병이 있는 경우 추정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속 처리</li> <li>- 그 외 복합상병의 부상병인 경우 특진에서 매우높음으로 판정될 경우 심의제외 추진 (공단 직환의 워크숍 통해 공유)</li> </ul> <p>나. 다른 부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판위 심의 불가피</li> <li>- 특진을 통해 &lt;승인 전 치료&gt; 대상으로 포함 진행</li> <li>- 장기적으로 추정의 원칙 대상만 일부 승인 및 휴업급여 우선 지급 도입 연구 용역 진행</li> </ul>
--	--

(3) 장기 과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
①선보장 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제도임을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 전문가 의견 수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li> <li>- 2021년 연구용역 발주 연구 착수</li> </ul>

(4) 인프라 확충, 인력 총원 등

개선방안	세부 내용
①판정위원회 조직 및 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하반기 인력총원(24명) 및 '22년 판정위 기능강화 위한 4개 판정위* 신설, 인력총원 추진(00명)</li> <li>* 4개 판정위: 서울(북부, 남부, 강원), 경인(북부, 수원), 부산(부산, 경남)</li> </ul>
②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수행병원 확대, 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진찰 수행 외부 위탁병원 현행 5개소에서 추가 확대 추진, 산업위생사 등 특진 수행인력 총원 추진(000명)</li> </ul>